

第143回國會 勞動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時 1988年7月21日(木)
場所 勞動委員會

議事日程

1. 現況報告(계속)(質疑)
 - 가. 勞動部所管

審査된案件

1. 現況報告(계속)(質疑)
 - 가. 勞動部所管(계속)(質疑)..... 1面

(零時29分 開議)

○委員長 金令培 成원이 되었으므로 第3次 勞動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1. 現況報告(계속)(質疑)

가. 勞動部所管(계속)(質疑)

○委員長 金令培 議事日程 第1項 現況報告를 계속하여 上程하겠습니다.

방금 質疑하시던 委員께서는 계속해서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委員 예. 계속해서 아까 그 「카드뮴」 關係에 관해서 한두마디만 더 質問을 하겠습니다.

「카톨릭」醫大에서 疫學調査結果가 因果關係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결론은 과거 文松勉君의 職業病에 관해서도 調査過程에서 한강성심病院에서도 같은 결과를 또 낸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첫째 事件이 일어난 다음에 이 疫學調査를 할 때 企業主에 의해서 現場이 變更됩니다. 變更될 可能性이 매우 높습니다.

두번째 調査의 誠實性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調査報告書 第4 參考事項 하는 데를 읽어보면 “과거 勤勞福祉公社 中央病院의 作業環境測定結果 鍍金班의 氣中 鉛濃度는 痕迹의으로 檢出되었고 「카드뮴」은 鍍金班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氣中 「카드뮴」濃度는 測定하지 않았다” 이런 의견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中央病院의 作業環境 測定結果를 리

用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中央病院은 測定할 수 있는 設備도 技術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援用되고 있고 그 다음에 「카드뮴」은 鍍金班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카드뮴」은 獨自의인 金屬으로 따로 工業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亞鉛에 結合되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亞鉛鍍金을 하는 곳에서는 항상 「카드뮴」이 必須的으로 따라다니게 되어 있는데 그와같은 것은 역시 같은 報告書에도 記載되어 있습니다.

亞鉛系의 化學構成成分이라고 하는 것이 「카드뮴」이 0.0002%가 들어있다는 것이 記載되어 있는데도 이 모순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문제에 부닥칠 때 하나는 勞動部가 產災適用對象이나 아니냐 하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지나치게 科學的 技術에만 의존하려고 한다 科學的인 技術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밝혀 낼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함께 밝혀 낼 수도 없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밝혀 내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作業의 環境이 變更된 것 調査對象의 變更 이것도 밝혀 낼 수 없고 그 다음 科學的 技術의 限界 이런 모든 부담을 勞動者 내가 證明하라 證明못하면 너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런

觀點에서 바라보면 거의 모든 職業病患者들이 사실은 보호탁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전에 李相洙委員께서 大法院判例를 들어서 引用해서 지적했듯이 적어도 이 高相國이라는 사람이 이 職場에서 4年間 勤務하기 이전에는 적어도 亞鉛이나 「카드뮴」에 露出된 일이 없었다 자기의 職業의 歷史로 보아서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職場에서 4年間 勤務한 곳이 亞鉛에 露出되고 있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몸에서 「카드뮴」이 檢出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으로 나머지 부분의 因果關係는 立證責任이 상대방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결국 그 결정은 누가 하느냐 現實적으로 產災適用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판단을 하는 公務員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基準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公務員의 認識 大轉換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당한 專門家들의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꼭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만일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런 점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에서 專門인 公務員이 아니면서도 혹시 作業環境이 變更되지 않았는가를 아무런 搜查權이 없는 저희도 가서 사람 몇 사람을 만나 봄으로써 진실을 발견해 낼 수 있는 그 現場을 왜 公務員들은 外面하고 추적하지 않느냐 4年前에 勤務하던 사람 2年前에 勤務하던 사람 1年前에 勤務하던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추적해서 調査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진실을 밝혀 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高相國씨사건에 관해서 補充質問이 계속 나왔느냐 하면 政策質疑의 방식이 2年 3년이 지나도 아무런 勞動政策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현실 때문에 具體적으로 하나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는 과정속에서 企業家들에게 警覺心을 불러 일으키고 公務員들에게 警覺心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는 것도 전체 政策을 立案하는데 상당한 어떤 動機가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件數主義의 質問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것

저희가 辯護士로서 한건 말아온 것은 아닙니다.

○李仁濟委員 제가 補充質問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職業病에 관해서 새로운 社會的 각성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궁금해서 法典과 勞動部 規則을 살펴 보니까 產災事故를 당해서 治療를 받고자 하는 勤勞者가 療養申請을 하는 요건 가운데 아까 이야기가 나온 使用者의 確認書 이것이 別紙書式으로 첨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產災事故 팔이 부러졌다든지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하는 사고는 使用者의 確認書를 받아 내는 것이 용이할지 모르지만 職業病의 경우에는 使用者 스스로도 그것이 과연 자기 事業場에서 작업을 하는 것과 因果關係를 갖고 발생한 病인지 사실상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職業病을 호소하면서 產災療養을 신청하는 患者에게 使用者의 承諾書를 첨부하라고 하는 기존의 法體系는 상당히 지금 盧委員께서도 이야기하신 因果關係 그러니까 作業關聯性的 立證責任問題와 관련해서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制度다. 그래서 本委員의 견해로는 적어도 職業病을 호소하는 患者가 療養申請을 할 때는 使用者의 承諾書를 요구하는 勞動部 規則을 고쳐가지고 그 경우에는 그것이 과연 職業關聯성을 가진 疾患인지 이것은 勞動部 스스로 여러 가지 專門病院에 診斷을 의뢰한다든지 또는 作業場을 실지 조사해서 하도록 이렇게 法制를 고쳐야만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선 職業病을 호소하는 患者를 보니까 시급히 治療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職業關聯성을 아무리 勞動部에서 조사하려 해도 病院에 診斷도 의뢰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사이에 그러면 환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產災職業病을 호소하는 患者가 治療費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예외일 것이고 또 治療費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病院이 그 患者에 대해서 성실하게 治療해 줄 까닭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職業關聯성을 확정해 가지고 療養處分 療養決定을 하기 전에 우선 假決定을 하는 제도를 도입해 가지

고 우선 勞動部가 產災保險에서 그 假決定이 있으면 療養機關에 대해서 治療費를 우선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職業關聯性이 없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그 假決定을 취소하고 그 발생된 治療費를 患者에게 求償權을 행사한다든지 해서 우선 職業關聯性에 대한 확정하는 기간 동안에 產災患者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방치되는 것을 막는 새로운 法體系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점을 勞動部長官이 책임지고 現行法의 施行令이라든지 規則의 改正만으로 對應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法에 例外條項을 두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成案을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만 우선 職業病이 발생했을 경우에 患者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逆으로 答辯드리겠습니다.

지금 李仁濟委員께서 質疑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勞動部 規定 一部改正으로 아마 施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각 시정하고 이 다음 常任會議때까지 是正措置 結果後의 經過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盧委員께서 말씀하신 역시 職業病 患者에 대한 保護策 事故現場을 신속히 파악하는데 파악하기 이전에라도 人道的인 차원에서 이런 患者에 대한 保護問題는 비슷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와 같은 저희 部の 規定 내지 部令을 고치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盧委員께서 質疑하신 부분에 대한 문제는 아마 이렇게 되면 충족되리라고 믿으면서 아울러 저희들이 실지 몰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지금 盧委員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 業務를 執行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겠다는 것을 아울러 添言드리겠습니다.

○盧武鉉委員 다음은 아까 제가 質問의 서두에서 「이란」에서 돌아온 大林産業 負傷 勞動者들의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

지금 이 勞動者들은 길가에서 천막을 치고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 사실 과연 그렇게 해야 하는지 많은 의문을 가진 입장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會社에서 그 勞動者들 負傷者들에게 보낸 書信에 의하면 상

당히 분개할만한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 勞動常任委 懇談會때 長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친 사람들은 產災가 적용되지 않지만 賃金은 100% 이렇게 支給하도록 하고 治療도 會社에서 다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온 편지에 의하면 賃金은 60% 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家族들을 위해서는 1週H에 10萬5,000원을 支給하겠다. 治療補助費 그러니까 看護費입니다.

그 다음 地方病院으로 轉院을 하고자 할 때에는 會社에서 病院을 指定하겠다고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家族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治療받고 싶은 곳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治療받기를 원하는데 왜 會社에서 指定하느냐 하는 문제도 역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더 큰 것은 負傷者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對策委員會를 만들어서 個人 個人은 法律的 知識이 없고 또 個人 個人마다 사정이 자기일을 충분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家族關係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對策委員會에서 함께 助言을 들어서 공동으로 대처하면 그렇게 不利益을 입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治療期間이 가장 오래된 사람이 對策委員會 幹部를 맡으면서 한분 한분이 退院이 되고 마지막 障礙가 확정되었을 때 障礙에 따른 어떤 도움을 集團的으로 주려고 하는데 이것을 會社에서는 미리 눈치채고 선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會社에서 對策委員會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集團이 되면 힘이 강해지고 지식도 좀 더 불어나고 辯護士한테 도움을 받기에도 편하다는 여러 가지 이유 말하자면 강해지기 때문에 會社에서는 싫어합니다. 對策委員會를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對策委員會가 일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事務室도 마련해 줄 수 없다. 그 다음에 現事態에 대해서 社長이 사과도 못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어제 제가 資料要請을 했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요. 이 점과 관련해서 어제 저는 식어도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死亡者들에 대한 補償處理가 끝나고 난 다음 會社 勞動組合에서 新聞廣告를 통해서 歸國 勤勞者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조사하는 勞動部에서는 어떤 정도 조사해서 어느쪽의 말이 옳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온 資料에는 雙方의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고만 얘기했을 뿐이지 역시 저번에 報告된대로 했을 뿐이지 어떤 결론은 전혀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이 결론내기가 어려운 것인지 新聞廣告를 보고난 뒤에 즉시 다시 勞動者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났습니다.

적어도 어떤 사실을 조사하는 公務員들이 조사를 해 본 경험이 있는 公務員들이면 現場까지 안 가 보더라도 어느쪽의 말이 진실이나 하는 것의 心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心證을 이렇다 그러나 아직도 더 정확한 資料가 필요할지는 모른다고 하면 모르지만 아직 중간 정도의 心證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니까 會社에서는 사과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心證이 어떠한지를 밝혀 주시고요. 調查結果 지금…… 中部事務所에서 다 조사를 했답니다. 會社職員도 조사를 했고 勞動者도 조사를 했는데 항상 조사는 상반된 주장이 있어도 그 어느 한쪽을 채택해서 결론을 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의 心證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 주시고 그 다음 아까 말했던 負傷者 家族들과 會社와의 葛藤關係에 관해서 勞動部로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는지 그 두가지를 묻습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 부분에 대해서 答辯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盧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입니다마는 家族에게 支給되는 것은 1주일마다 저희들은 10萬5,000원 支給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治療者들이 현재 3·40명이 계속 籠城을 하고 있고 會社 「셔트」門이 내려진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이 문제를 담

당하고 있는 서울支廳에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가 具體的인 報告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역시 負傷者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사람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현재 勞動部에서는 會社側하고 調停役割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이면 제가 돌아가서 報告를 받으면 좀 더 具體的인 사항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心證問題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듯이 雙方의 주장이 서로 상이합니다. 그러나 좀 더 公正性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外務部를 통해서 現地公館에 照會하고 있는데 調查回信이 아직 없고 저희 勞動部 調查擔當課長이 昨日 現地로 출발했기 때문에 도착하면 보다 具體的인 상세한 진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파악되는 대로 書面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나중에 報告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盧武鉉委員 이 문제에 관한 細部的인 조사는 하나 하나의 사건에 관해서 조사를 저도 다 했습니다. 했는데 勞動者들의 얘기는 여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일치하고 진지했습니다. 그 다음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묻겠습니다. 이 勞動者들 얘기중에서 몇 가지 勞動條件에 관한 불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勞動條件에 관한 불평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또 다시 大字 「리비아」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 現場에서 大字에서 勞動者들에게 이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勤勞契約期間에 관해서는 기존의 18個月 勤勞契約者는 12個月 勤勞後 本人意思에 따라 歸國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 경우 航空料의 本人負擔을 면제하겠습니다. 航空料에 관한 勞動者의 불만이 역시 있습니다. 休日作業은 各 個人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것은 그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 식사의 質을 改善하겠습니다. 이것도 會社의 식사의 質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역시 大林 「이란」 事件에서도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大林

「이란」 사건에서도 같은 문제였었는데 여기 大宇가 약속한 것은 職員과 技能職 社員의 주방을 統合 運營하겠읍니다. 소위 技能職 社員과 管理職 社員사이에서 差別的 待遇 非人間的 待遇問題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延長契約者라든지 中途歸國者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전부 똑같이 海外事業場에서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는데 海外 就業者들에 관한 勤勞條件에 관해서 사건에 勞動部에서 어떤 統制裝置를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海外의 事業場이 風土病이 있는 곳이라든지 風習에 있어서 매우 文化水準이 낮아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패는 이런 食人種 비슷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든지 얼마전에 문제된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戰爭地域이라든지 이와 같은 勤勞條件 그리고 나갔을 때 外國에서의 勤勞條件이 韓國의 勤勞基準法이라든지 國內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의 與否 이와 같은 事前 또는 事後 統制措置가 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면 答辯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答辯드릴까요? 그 문제는 요전번 朝餐懇談會때도 역시 지적이 있어서 지금 海外에 送出하고 있는 業體에 대한 勤勞契約를 저희들이 「샘플」을 전부 취합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大宇 「리비아」 사건과 관련하여 勤勞者의 歸國 航空料 부담인데 얼마전에 저희 勞動部는 이러한 問題點이 있기 때문에 海外에 送出하고 있는 建設業體의 擔當官들을 저희가 緊急召集해서 그 가운데에서 시정된 것은 契約期間 途中에라도 公醫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身病으로 인해서 作業能力을 상실했을 때는 현재까지 歸國 航空料는 本人이 부담했었습니다. 이것을 會社가 부담하도록 저희들이 저희 部의 지시로 이미 規定을 시켰고 하나 발견되는 대로 이러한 勤勞者들에 대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은 현재 逐次的으로 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大宇 「리비아」의 廚房統合 問題등 좀 더 具體的인 문제는 저희가 솔직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설명했듯이 저희 局長이 班長이 된 일부 「팀」을 현재 現地에 出張을 보내게끔 計劃하고 있다는 것을 參考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盧武鉉委員**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은 費用을 들이시는 것 보다…… 바꿔서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大宇 「리비아」 現場에서 돌아와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 勤勞者들에 대해서 勞動部에서 조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面談해서 하나 하나 조사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全體人員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는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샘플 케이스로 해서 部分調査는 하고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統計를 내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런데 그 調査結果가 勤勞者들이 國內에 와서 拘束을 당해야 될 만큼 勤勞者들쪽에 잘못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全體的인 사항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일부 勤勞하고는 관계 없이 어떠한 暴行으로 인해서 拘束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던 것으로 저는 報告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외 勞動現場에 있어서의 어떠한 勤勞基準法 내지 勞動關係法 違反으로 해서 勤勞者身柄을 拘束시킨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이 사건에 관련하여 會社를 勞動法 違反으로 立件한 사실은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것은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具體的으로 나중에 나오면 그것도 역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盧武鉉委員** 歸國한 勤勞者는 며칠만에 拘束되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아마 즉시 拘束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즉시 連行돼서 조사 다하고 拘束시킬 사람은 다 시키고 나머지는 풀어 주었지요?

會社를 立件하는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역시 傍證을 얻으려니까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들 一線機關의 역시 人力不足 또 혹은 技術不足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國際的인 사건을 一線機關의 人

力不足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國際的인 사건이고 어쩌면 이 사건 자체 있어서 大韓民國 勞動者가 돈 몇 푼 벌려고 갔다가 外國의 官吏로 부터 또는 官吏가 아닌 請願警察로 부터 엄청나게 부당한 일을 당하고 왔는지도 모를 일을 그냥 이것을 一線機關에만 맡겨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勞動者들이 탄피를 주워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갖고 와서 호소하고 있고 실제로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는 이 國會議員한테까지 소위 現場에서 받는 誓約書 寫本이 入手되어 있습니다.

國內에서 있는 動勞契約書가 아닌 별개의 契約書를 받았다는 증거가 입수되어 있는데 이제 그 勞動部公務員하고 國會議員하고 職業을 서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사를 하러 다니고 勞動部公務員이 이제 國會에 와서 일을 하면 어떨까요?

○**勞動部長官 崔明憲** 필요하면 저희들이 盧委員님의 支援을 받도록 하고 또 盧委員께서 저희들 職員의 支援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하시는 일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러한 資料는 한번 저희들한테 넘겨주시면 業務 추진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盧武鉉委員** 지금도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平民黨舍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平民黨을 도와주는 결과가 될까봐 혹시 公務員들이 가기를 꺼려하실지 모르지만 그곳에라도 찾아가서 責任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平民黨 점수 올라가면 제가 입장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公務員의 옳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參考로 하겠습니다.

○**盧武鉉委員** 그 다음 職場閉鎖와 관련된 부분인데 어제 요청한 資料는 잘 받았습니다. 濟州 새한病院과 高麗남훈病院의 事業主가 입건이 되었다는 내용하고 大陸「레미콘」부분은 아예 報告書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한은 가장 長期的으로 심각하고 事業主의 不當行爲가 가장 심각한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濟州 새한病院이 經營赤字와 醫師不在를 이유로 폐업했다고 이렇게 不當勞動行爲 救濟申請을 기각을 했는데 醫師가不在한 것은 病院이 職場閉鎖를 하고 난 다음

에 醫師가 떠나지 않았습니까? 어느 쪽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職場閉鎖가 되기 전에 醫師가 먼저 떠나고 職場閉鎖가 된 것인지 소위 勞動組合이 결성되어서 분류가 생기고 난 다음에 醫師가 떠난 것인지 그 以前에 醫師가 떠났기 때문에 폐업을 한 것인지 조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經營의 赤字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赤字라고 판단하셨는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판단 하셨는지 事業主가 입건되어 있으니까 조사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보다 具體的으로 파악해서 그것을 나중에 書面으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盧武鉉委員** 몇 가지 더 質問하겠는데 이 病院이 閉業하기 직전에 約 2個月前에 2億원 이상 가는 새로운 機資材를 도입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런데도 經營赤字와 醫師不在로 閉業한다고 했다면 勞使紛糾가 있었다는 사실 이외에 달리 閉業해야 될 만한 아무런 客觀的인 사정이 없을 때에는 勞使紛糾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귀찮아서 정말 病院을 그만들 생각으로 閉業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런 것이 아무 문제 없을 때에 自意로 病院을 그만두는 것과는 法律的 評價가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高麗남훈病院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病院에서의 다른 점은 勞動委員會에서 救濟命숨을 내렸던 것이 다릅니다. 大陸「레미콘」역시 마찬가지입니다. 大陸「레미콘」역시 여러 가지 系列企業群을 거느리고 있고 勞動者들이 농성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敷地 1,000坪에 15層짜리 「호텔」 鳥瞰圖가 서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머나먼 中東땅 또 「아프리카」에 까지 가 가지고 한달에 60萬원 정도를 잔업까지 승해가지고…… 12時間씩 일을 해가지고 熱沙의 더위속에서 한달에 60萬원 내지 65萬원을 벌려다가 그것을 혼자도 아니고 수백명이 함께 마음이 맞아서 다같이 共感할 수 있는 분한 일로 조금 感情을 억제치 못해서 잘못이 있었다고 칩시다. 돌아와서 자기 家族 얼굴도 보기전에 구치소부터 먼저 보내는 이렇게 촉박한 이런 法을 가진 大韓民國에서 수십명 수백명의 勞動者가 職場閉鎖라든지 부당하게 僞裝閉業하는 이와 같은

事態 勞動者들을 한마디로 길거리로 내 보내는 이런 事態에 대해서 처벌이 왜 이렇게 미온적입니까? 이 처벌의 기준에 관해서 最終인 결정은 法院과 檢察에서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勞動問題의 심각성을 體系的으로 일깨우고 적어도 救濟命을 거부하는 公權力의 명령을 거부하는 소위 體制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長官의 意見을 개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와 같이 불공평한 司法的인 法 적용이 있는 이상 이 나라에서 不當勞動行爲는 영원히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길거리에 쫓겨 나오는 勞動者들은 계속 발생하게 마련이고 解雇 寧하는 勞動者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제가 答辯은 시간도 없으니깐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이제 제가 資料要請했던 것인데 聯合鐵鋼과 大韓造船公社問題인데 聯合鐵鋼에 대해서 勤勞條件에 관계된 勞使紛糾가 아니라고 한 마디로 答辯하셨는데 勤勞條件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勤勞條件이라고 하는 것은 勤勞의 댓가로 받는 돈과 또 돈의 크기와 노동을 하는 作業環境 勞動強度 勞動時間 이런 것만이 勤勞條件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勤勞을 함으로써 해서 자기가 느끼는 보람 가치에 대한 自負心 이런 것도 아울러 좋은 勤勞條件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勤勞條件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勤勞條件만을 말하는 것인지 長期的으로 이 職場에서 繼續的으로 自己向上을 꾀할 수 있는 보다 더 좋은 條件을 유지할 수 있고 自己向上을 꾀할 수 있는 기대 이것은 勤勞條件이 되지 않는지요?

예를 들어서 聯合鐵鋼이라고 한다면 그 會社가 앞으로 成長發展할 수 있는 방향으로 會社가 運營될 때 까지는 勞動者의 利益을 勤勞條件이 될 수 없습니까? 會社가 成長하지 못 할때에 勞動者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장래의 勤勞條件입니다.

그 다음 會社 經營者가 勤勞者에게 부정한 일을 강요할 때 그것을 돈만 많이 주면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거부할 수 있는 權利도 勤勞條件에 해당되는 것인지? 적어도 製藥會社의 勞動者들은 藥品에 마약을 흡입하

는 것을 거부할 權利도 당연히 勤勞條件이라고 하겠습니까.

勤勞의 社會的 가치에 대한 자기의 自負心과 양심과 관련된 문제도 훌륭한 勤勞條件이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의견이 다르시다면 答辯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報告書에 勤勞條件 등에 관계되는 勞使紛糾가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聯合鐵鋼問題에 대해서 勞使紛糾를 해결하는 次元에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李相洙委員 聯合鐵鋼에 解雇 勤勞者가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예. 알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解雇問題때문에 勞使問題가 격화된 것도 알고 계십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예.

○李相洙委員 그러면 勤勞者가 解雇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勤勞條件의 하나인데 어떻게 勞使紛糾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제가 報告받기로는 一部紛糾로 해서 부당하게 勤勞者들이 不利益을 받는 것은 報告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一部 勤勞者는 A쪽 一部는 B쪽 C쪽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經營權 所有主에 따라서 많이 不利益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盧委員께서 말씀하셨지만 政府에서 빠른 時日內에 처리하는 方向으로 企劃院에서 무엇인가 方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정상화 方案이 결정되면 그러한 문제는 저희 勞動部에서 같이 결들여서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제가 한 가지만 첨부하는 데 3名은 解雇 無效訴訟 提起해 가지고 勝訴했습니다. 나머지도 현재 訴訟을 提起했는데 長官께서 이미 勝訴해서 확정판결이 나서 이긴 분도 계시는데 訴訟까지 할 필요가 없이 문제 해결할 필요성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것은 제가 알아서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盧武鉉委員 적어도 判決에 승복하지 않거나 勞動委員會의 救濟命을 승복할 수 없는 企業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國家의 권위에 대한 公權力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난번 本會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體制에 대한 도전 세력은…… 쫓겨나서 부당함을 호소하는 正門에 門辟報를 붙이고 出動鬪爭을 하는 勞動者들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부당하게 쫓아내는 事業主들이 그러한 세력입니다. 觀點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大韓造船公社는 현재 公社整理法에 의한 法定管理가 시작 되었는데 法定管理가 시작 되었을 경우에는 整理計劃案을 세우게 되고 整理計劃案이 債權者나 理解關係人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대로 執行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번 一般的인 不實企業 해체에 따른 特惠 金融이나 특별한 절차가 필요없이 整理計劃 그 自體에 의해서 債務의 유예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가장 不實企業整理에 있어서의 가장 원만한 方法이 現實的으로 執行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一般的으로 法定管理가 되었을 경우에는 종전 經營者가 管理人이 指名되어 가지고 거기에 관해서 理解關係를 형성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積極的으로 이 企業의 主體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法定管理가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釜山뿐만 아니라 下請企業까지 합하면 수만의 勞動者의 生業이 걸린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하나의 施案입니다마는 勞動委員會라든지 또는 主來銀行이라든지 또는 造船事業을 과거에 經營하면서 탁월한 수완을 보였지만 몇 분의 專門經營人이 확실하게 管理團을 만들어서 法律上 管理人이 되어가지고 全體 勞動者들과 힘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그래서 적극 計劃案이 세워지고 銀行이 그를 승인한다면 20年拒置 20年分割償還도 그저 銀行에서 一方的으로 처리한 것과는 달리 法院의 결정과 會社整理 절차에 의해서 外國에서도 하는 制度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輿論에 이 勞動者들의 빚받치는 비난도 받지 않고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같은 좀 더 진보적인 方法 그런 경우에 株主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새로이 參與하는 經營者나 勞動者가 함께 株主가 되는 方案도 檢討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만일 勞動者나 管理職社員들이 함께 하나로

단결이 되어서 유능한 經營者를 뒷받침 한다면 그리고 자기가 장차 이 會社의 빛만 다 갖고 난다면 株主가 된다는 이런 희망이 있을 때에 과연 勞使紛糾가 또 일어나겠습니까? 時間外 勤務를 타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좀 과거와는 색다른 돈 있는 사람들끼리 주거나 받거나 갈라먹는 적당히 評價 해가지고 또 무슨 利權이 돌아가는 듯한 이런 일이 없는 새로운 方法도 勞動部에서 창안해서 政府의 施策으로 채택해 보도록 노력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勞動部長官 崔明憲** 저희 勞動部가 승격이 되어서 그만한 權限을 行使할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마는 이 大韓造船의 문제는 2日前에 釜山市長으로 부터 직접 建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勞動部長官으로서 제가 직접 얘기 할 수는 없고 저희 關聯部處인 財務部長官한테 이러한 現地事情을 얘기해서 勤勞者들에게 역시 不利益이 돌아가지 않도록 政策的인 해결책을 모색해 달라는 長官으로서의 그와 같은 協助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 이 문제는 계속해서 關係當局하고 다시 한번 協議를 계속 進行시키겠습니다.

○**盧武鉉委員** 거듭 說明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企業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마치 財閥들이 利權처럼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勞動者들이 株主가 되는 새로운 會社整理 절차라는 法的인 보장 장치도 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方案을 한번 檢討해보아 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防衛產業體는 다음에 따로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엄청나게 많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提起하면서…… 防衛產業自體가 紛糾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今年度에 들어와서 防衛產業體에서 있었던 紛糾을 하나 하나 생각해 보시면 防衛產業體로 지정되어서 勞使紛糾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보다 더 紛糾가 결사적이었고 또 그 파업에서 이루지 못하면 처벌받을 負擔때문에 더욱 결사적으로 團結하고 싸웠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答辯을 원하지 않습니다.

○**李海瓊委員** 간단하게 補充質問 하나 하겠습니다.

防衛産業體 部門은 사실은 오늘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야밤이 되는 바람에 時間이 없습니다. 어저께 제가 防衛産業體의 就業者數와 軍需部門과 民需部門의 비중과 生産品目에 있어서의 비중과 部署別 人力의 배치 이런 部門에 대한 資料를 요청했습니다.

71個 事業場에 대해서는 별도로 提出하겠다고만 되어 있고 아직까지 提出 안하시고 계신데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과 더불어 오늘 答辯 안하셔도 좋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防衛産業體에서 軍需와 民需에 있어서는 저희가 명쾌한 論理로 說明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防衛産業體에서 生産한 品目中에서 國內에서 生産한 品目中에서 軍需 部門中에서 國內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外國에 輸出하는 品目 이 경우에 軍需部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軍需品이 아니기 때문에 輸出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商品으로 처리를 해서 그에 종사하는 民需部門에 종사하는 勞動者로 분류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관련된 資料와 이런 요청한 資料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資料는 빠른 시일내에 提出하겠습니다. 이 防衛産業體가 生産한 物品이 國內에서 防衛産業으로 사용될 때하고 商品으로 輸出될 때 防衛産業에 대한 區分問題인데 이 防衛産業에 대한 區分 내지는 指定은 當部所管이 아니고 商工部에서 주로 이것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저희 勞動部로서는 단지 이와 같은 業體가 防衛産業으로 指定이 됐다는 通告로써 業務를 執行하고 있기 때문에 李委員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商工部에 알아서 추후에 다시 그 부분은 答辯드리겠습니다.

○盧武鉉委員 지루하신텐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大韓光學은 「렌즈」만 만든다고 해서 防衛産業體로 되어 있고요. 삼공물산은 戰警들 쓰는 防毒面을 만든다고 防衛産業體고 催淚彈 만드는 삼양化學도 防衛産業體고 또 「내셔널 프라스틱」은 催淚彈 겹대기 만든다고 防衛産業體입니다. 지금이 戰時가 아닌 바에야 防

衛産業體에 관한 이와 같은 一律的인 勞動運動의 제한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끝을 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馬山 TC電子와 SOWA問題도 짚고 싶습니다마는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答辯을 끝내실 무렵에 제가 提起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業務報告의 내용이 國民的 관심이 가장 큰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報告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을 그래서 하나 하나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마는 지금은 時間이 안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勞動部 또는 傘下機關에서 여러 가지 教育計劃이 있는데 그리고 技能訓練計劃도 있고 다 있는데 이와 같은 教育中에서 勞動組合運動의 趣旨와 歷史 그 價値 소위 權利教育을 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어느 부분입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제가 다시 指針을 내려서 正當한 勞組活動 또 勞動關係法에 대한 全般的인 教育을 하도록 이미 指針으로 세워졌고 비단 이것은 저희 勞動部에서 실시하는 一般勞動者 내지는 訓練生뿐만 아니라 經營主에까지도 이러한 부분을 教育시키도록 이미 教育計劃을 수립해서 進행중에 있다는 것을 參考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盧武鉉委員 13「페이지」에 있는 教育計劃은 이미 報告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職業訓練管理公團에서 하고 있는 職業訓練過程에서 단순히 손으로 하는 技術만 익혀주는 것인지 아니면 民主社會에서의 市民意識과 勞動者로서의 正當한 權利意識을 함께 갖춘 勞動者가 되도록 소위 職業訓練過程에 있어서의 勞動法 이라든지 勞動意識 勤勞意識教育을 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技術만 習得시키는 것이 아니라 敎養科目의 비중을 30% 40%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敎科過程은 管理公團에서 期別 혹은 分期別 教育結果分析을 해서 그때그때 새로운 결과에 의한 計劃에 의해서 教育을 執行시키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敎材나 實績을 文書로 申請하겠습니다.

다음 勞勤部 業務報告 13페이지 教育計劃 중에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勞使關係指導者 및 講師 1,100名을 勞勤研修院에서 研修를 시킨다고 했는데 누구를 對象으로 해서 이 教育을 받고 나면 어디로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勞勤部長官 崔明憲 이것은 勞使 다시 말씀드려서 勞組의 幹部 組合長 그 다음에 使用者側의 幹部들을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위의 두줄에 最高經營者 및 勞務管理者 4,500名 教育이 있고 勞組幹部 4,000名 教育이 있습니다. 있고 또다시 教育이 있기 때문에...

○勞勤部長官 崔明憲 맨위의 것은 最高經營者 經營陣에 대한 문제고 지금 맨 처음에 말씀드린 勞使關係指導者 및 講師는 현재 勞組가 설립되어 있지 않는 勞使協議會 幹部들 다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盧武鉉委員 이 사람들이 教育을 받으면 講師가 됩니까?

○勞勤部長官 崔明憲 그 사람들이 教育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事業場에 가서 勞勤關係法에 대한 講師役割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盧武鉉委員 다음은 어제 李仁濟委員께서 提出을 요구했던 資料중에서 소위 在野 또는 運動圈 勞勤團體나 勞勤人士들의 내용을 물었는데 그 資料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長官께서 몇가지 質問과 答辯을 하는가운데에서 反體制의인 勞勤運動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報告書에 나와 있는 團體가 저기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 團體나 또는 이번 文松勉군 葬禮때 모여서 葬禮節次를 함께 해주고 葬禮委員會를 만들었던 團體이 많은 團體들을 포괄적으로 規定하면 소위 反體制勞動者 團體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라면 反體制運動團體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한번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勞勤部長官 崔明憲 여기 수록된 이 團體名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그때 이 團體에서 행해지는 행동이 그러한 것으로 표현될 때 이것은 저희들이 體制反對的인 그러한 行動을 했을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러한 것을 적용하고 있지 여기에 열거한 團體

自體가 근본적으로 그러한 團體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盧武鉉委員 적어도 反體制 그리고 體制否定 勢力이라는 것은 總理 國政報告에서부터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民主黨代表委員의 演說에서도 나온 얘기고 또 勞勤部長官의 報告에서도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國民은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소위 在野團體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 행위가 그 엄단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政府에서 말하는 體制否定的 運動 그중에서 勞勤運動과 관련되어 있는 또는 勞使紛糾와 관련되어 있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지적하신다면 어떤 것들이 되는지 정확하지 않으면 저도 당장 運身하기가 便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도 좋고 무엇을 안해도 좋은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勞勤部長官 崔明憲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質問인데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잘 준비를 해가지고 별도로 盧委員님께 나중에 資料로 提出하도록 하겠습니다.

○盧武鉉委員 그 概念을 몇가지로 파악할 수 없으면서 그와같은 用語를 쓰시는 것은 그 用語가 國民을 두개로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用語에 대한 정확한 概念 規定 없이 정확한 행위의 類型에 관한 지적없이 그렇게 하시면 많은 國民들이 제가 어디가서 무슨 일을 할 때도 國務總理가 말하는 體制顛覆的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規定하기 딱 알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前科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항상 戰警들에 의해서 길가에 틀어막혀가지고 왁신왁신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은 政府에 맞서는 사람들이니까 體制顛覆的 運動을 하는 사람이라고 또 인정받게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聯合鐵鋼에서 解雇됐던 사람들도 역시 길거리에 나와서 때로는 부딪치기 때문에 역시 같은 類型으로 비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명백하게 범위도 規定하지 않고 함부로 用語를 쓰신다는 것은 國民에 대해서 일종의 험박 공갈입니다.

○梁慶子委員 反體制와 反政府間의 차이가 있

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長官의 뜻은 反政府라는 의미 아니지요?

○**勞動部長官 崔明憲** 反體制라는 말입니다.

○**梁慶子委員** 反體制라는 의미지요? 盧武鉉委員께서 약간 그것을 비약하신 것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反體制와 反政府의 차이를 勞動 一般勤勞者들이 정하고 나오는 것을 反政府 反體制로 보고 또 反政府로 보는 것인지 지금은 아니겠습니까마는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다고 해서 남들 다 지키고 있는 이 시간에 議事進行發言 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長官께서 反體制를 아주 反體制는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反體制主義者가 분명히 있다고 전제해 놓고 그런 사람을 엄단하겠다는 것이지 온당한 勞動爭議에 대한 어떤 後援者로서라든가 그런 의미에서 제재를 하겠다는 의사가 아닌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反體制運動이라는 말이 가지는 그 위력을 우리가 말의 概念을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하는 論理가 아니고 우리 國民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일에 反體制運動은 極少數對 대부분의 激烈勞動運動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反體制運動은 아니라고 보신다면 하나의 提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産業災害에 관해서 專門的인 醫師가 없어서 또는 그 問題間 깊은 관심을 가진 醫師가 없어서 항상 고심하고 있는데 소위 在野勞動運動을 하고 있는 또는 勞動運動을 支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醫師의 資格을 가지고 이 문제에 관해서 만일에 經濟的으로 어느정도 뒷받침만 된다면 이 문제에 전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름하고 있는 몇個의 勞動團體들중에서 勤勞者들의 勞動教育을 꼭 勞動硏修院에서 안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에게 말기면 정말 勤勞者들을 잘 教育해낼만한 잘 相談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사람들을 기왕에 앞으로 勞動教育도 擴大하고 또 相談이라든지 勤勞者 福祉施設을 많이 한다면 이사람들에게 福祉施設을 말기는 방향으로 한번 勞動政策을 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러신다면 상당부분 갈등

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 하고자 하는 사람 돈을 안줘도 열심히 勤勞者를 가르치고 싶어하고 勤勞者들에게 충을 가르치고 싶어하고 노래를 가르치고 싶어하고 勞動法을 가르치고 싶어하고 글자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많은 정열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 勞動部가 公社라든지 또는 直接行政機關이 펼쳐려고 하는 많은 教育이라든지 福祉事業에 이 사람들을 參與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勞動部長官 崔明憲**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分析해서 추후에 거기에 대한 결론은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盧武鉉委員** 이 정도로...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李康熙委員** 盧委員님께서 하신 얘기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在野團體에 대한 論難問題에 있어서 教育을 시키거나 물론 그런것에 대해서는 勞動組合의 活性化 問題點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評價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教育問題나 이런 것이 어느 하나의 分野가 됐던 또 어느 층이 됐든간에 教育이라는 次元은 상당히 一元化되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문제가 本委員의 생각인데 勞動部가 그런 것을 과연 추천했을 적에 어느 기준을 두려는 것인지 長官께서 명확한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 기준은 이 자리에서 제가 세우지도 못했고 또 세울수도 없고 만일 추천이 되어온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檢討를 해서 결론을 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李康熙委員** 그러니까 勤勞者들의 教育에 대한 어떤 현재의 勞總教育院이라든지 또 勞動部가 勞動硏究院에서 施行하는 教育등 여러가지 勞動分野에서 하고 있는 教育이 있는데 그러한 劃一的인 教育行事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칫 혼선의 우려도 있다는 것을 本委員은 勞動部 行政에 당부를 드립니다.

○**委員長 金令培** 감사합니다.

質疑申請을 하신 바 있던 李潤子委員 그리고 金東仁委員께서는 書面으로 質疑를 대신하겠다고 말씀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勞動部에서는 書面으로 答辯을 提出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니다. 아울러서 두 委員의 質疑內容과 政府 側答辯은 速記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梁慶子委員 말씀하시지요.

○梁慶子委員 委員長님께 議事進行에 대해서 여쭙어보겠는데 오늘 열분이 質問 申請을 했고 그중에서 與黨委員이 네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두분은 書面質疑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이 왜 이러한 불공평한 議事進行을 하게 됐는가는 전적으로 委員長에게 責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불공평합니다. 지금 與黨에서 두사람이 質問을 했는데 약 1時間半정도 소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타 식사시간 이런 것을 빼면 野黨委員 여섯분이 質問한 것은 9時間餘에 걸쳤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무제한으로 質問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과거의 관례도 일시에 包括的인 質問을 해서 包括的인 答辯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무제한으로 할 수 있었습니까라는 議事進行이 委員長 중심으로 20分 정도 30分 정도 양해를 구해서 진행했던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기회를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委員長이 적절히 시간을 管理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물론 저희 再選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포용력이 다소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 오신 분이 그야말로 대변할 수 있는 많은 件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첩되고 극히 주관적인 事項을 가지고 質問하는 事項도 있었을때 委員長은 그냥 보고만 계셨습니다 물론 재 個人的으로는 양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왕 지난 일이지만은 앞으로는 이것을 적절히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런데 불공평하게 議事進行을 했다고 하는 정확한 내용이 됩니까?

○梁慶子委員 무제한으로 하였다는 그 規則을 제가 人間的으로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첩된 質問이라든가 그러한 個人的으로 취득한 어떤 「소스」에 대해서 너무 집요한 質問이 있을 때는 委員長이 이것을 적절히 중지해 줄 수 있는 처지에 있는 분

이 그것을 묵살하시고 계속 무제한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표현에서 結果적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있었습니까라는 좋습니다. 다같이 똑같은 목적으로 여기에 勤勞者들을 위해서 앉아 있는 우리들이라고 보았을 때 우리들이 아직 發言하지 않은 분들의 이야기도 곁들여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소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結論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民正黨 委員 두 분이 發言을 못한 것을 그냥 接受하시고 본인이 원했지만 書面으로 質疑하겠다는 것을 委員長께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데 있어서 왜 書面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가를 참작해 주십사 하는 의미도 있었고...

○委員長 金令培 아닙니다. 이것은 質疑申請하신 委員의 自由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점을 委員長에 대해서 추궁하는 發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論理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梁慶子委員 論理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會議을 진행하시겠다는 뜻입니까?

○委員長 金令培 이러한 방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委員長으로서…… 法的인 근거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대로 지적을 해주셔야지……

○李海瓊委員 議事進行發言 하겠습니다.

오늘 常任委員會 첫 質疑에서 李相洙委員이나 저나 盧武鉉委員이나 國會에서는 신출내기이기 때문에 國會의 慣行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해서 길게 質疑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지루할지 몰라도 1千萬 勞動者의 生存權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시간이 부족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도 質疑할 事項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1時半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夜間作業을 하는 勤勞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終了하는 참에 두 분 與黨 委員께서 質疑할 시간이 없어서 부득이 書面質疑하겠다는 結論을 맺으면서 議事進行發言을 요청하셨습니다. 따라서 本委員도 本 常任委員會가 他 常任委員會에 비해서 불과 어제 午後부터 對政府 質疑를 하는 짧은 시간을 가지고 質疑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가 常任委員會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지난 번 幹事會議에서 다른 有害事業場을 訪問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政府側의 확실한 勞動政策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對政府 質疑를 계속할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金令培 지금 李海瓚委員 動議內容이 있습니다.

그전에 이것은 記錄上 분명히 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梁慶子委員께서 委員長이 不公平한 議事進行을 했다. 그 내용은 무제한 長時間 發言하도록 그냥 두었다 중복되는 質疑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制止하지 아니하고 방치해 두었다 이 두가지 내용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委員長으로서 質疑 癖두에 분명히 밝혀 둔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國會議法 第56條1項 委員은 委員會에서 同 議題에 대하여 回數 및 時間등에 제한없이 發言할 수 있다. 2項 委員은 委員會에서의 質疑를 一問一答 方式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規定되어 있음을 상기시키고 “委員長은 國會議法에 規定된 바에 따라서 議事進行을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委員이 長時間 質疑를 했다 하는 것도 國會議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委員長으로서 制止할 수 있는 權利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내용을 왜 制止 안했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質疑하시는 委員의 양식에 속하는 문제이지 委員長으로서의 그것을 委員의 自尊과 입장도 있는 것인데 制止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해명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議事進行 하는 동안에 심지어 이 사람 所屬政黨이 野黨에 있습니다. 라는 野團委員들께서 다른 얘기 꺼낼 때 委員長로서는 “會議進行에 있어서 원만하게 秩序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러한 간곡한 부탁과 노력을 해서 원만하게 本 委員會 會議를 진행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委員長의 노력과 충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議事進行發言을 통해서 委員長에게 대한 추궁을 했다는 것은 극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하는 말씀을 남겨 두는 바입니다.

委員長으로서 할 얘기는 이것으로 끝내고 방금 李海瓚委員께서 發言하시기를 오늘 이것으로써 質疑는 충분치 못하니까 계속해서 質疑를 해야 되겠다 하는 動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委員의 動議의 여부 없이 質疑終結은 委員의 質疑가 없을 때 終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委員들께서 계속 質疑를 하시겠다고 하면 이 시간 이후 계속할 수 있는 것이고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안되었으니까 잠 좀 자고 와서 계속하자 하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委員長로서는 다른 權限이 없습니다.

○張永結委員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議事日程을 짜는데 있어서 委員長님과 우리 4黨 幹事가 모여서 21日 午前까지 政策質疑를 마치고 産業現場을 가도록 우리가 議事日程을 協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議事日程에 대한 協議는 우리 4黨 幹事가 모여서 다시 論議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委員長 金令培 방금도 얘기를 했습니다. 라는 엄격하게 規定에 따라서 여러 委員님들 중에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없을 때만이 委員長로서는 質疑終結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李海瓚委員께서 계속 質疑를 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質疑終結을 委員長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세요.

○李海瓚委員 議事進行發言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3代 國會가 討論을 極大化하는 수준 높은 討論의 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래로 최대의 懸案問題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勞動問題이기 때문에 충분한 討論을 통해서 國家政策의 수립과 執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民正黨의 두 분이 發言을 못하셨고 다른 분들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防衛産業體 관련 부분에 관해서 資料 要請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時點까지 資料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具體的인 質問을 못하고 있는 事項도 있습니다. 그 외에

도 보다 더 면밀히 짚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先輩 同僚 委員들이 質疑를 이만하고 終結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저도 그에 구태여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常任委員會가 또 있을 수 있고 書面을 통한 質疑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고집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委員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國會법에 보장된 質疑時間과 回數 이런 것에 의해서 會議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感情의인 言辭를 말씀하신 委員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質疑 討論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고 또 미진한 부분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動議案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여기서 終結하고 다음 常任委員會 定期國會에서 보다 문제를 深層의으로 파고 들 수 있다고 한다면 아까 저의 發言을 취소하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러면 약간의 부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李潤子委員님 그리고 金東仁委員님 방금 제가 밝힌 대로 書面으로 質疑를 대신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李潤子委員 예.

○金東仁委員 예.

○委員長 金令培 좋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議事日程은 모두 끝났습니다.

散會에 앞서 委員長으로서 政府側에 대해서 한 마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저께와 어제 그리고 오늘 現況報告와 質疑를 통해서 여러 委員님들이 지적한 바 오늘날의 勞動問題에 있어서 소위 敎社隊의 暴力事態問題 職業病을 비롯한 産業災害問題 極限對立의 勞使紛糾問題 등 심각한 懸案問題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勞動部에서는 委員님들이 지적한 이러한 勞動懸案問題를 해결하고 質疑 내용을 政策에 반영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政府는 勞動者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고 生存權이 보장되는 民主勞動政策으로 전향하여

하루 속히 産業社會의 平和와 安定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여러 委員님들을 대신해서 촉구해 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子正이 넘어서 오늘입니다. 有害物 質取扱事業場 視察를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예정을 늦추어서 11時30분에 國會에서 仁川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피곤하시고 고단하시겠지만 잠 좀 주무시고 11時30분까지는 반드시 本 勞動委員會에 한 분도 빠짐없이 出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會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時49分 散會)

【書面質疑·答辯書】

○金東仁委員

(問1) 産災勤勞者 生活定着金 信用貸付 擴大 用意

産災勤勞者 生活定着金 貸付事業은 信用貸付를 極히 制限함으로써 擔保提共이 不可能한 申請者들의 怨聲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現行 信用 對 擔保比率 3:7에서 信用貸付의 比率을 大幅 늘릴 計劃은 없는지? 實際 今年 信用貸付 選定者는 1·2級 및 3級 一部밖에 안됨. 2月10日~3月10日까지 申請接受後 3月末까지 個別通報한다고 했는데 現在까지 貸付金이 支給되지 않고 있는 理由는?

(答辯)

○産災勤勞者 生活定着金 貸付事業에 있어 信用 및 擔保比率를 3:7로 한 것은 貸付對象者인 産災勤勞者 大部分이 零細미고 償還期間도 2年据置 8年 分割償還으로 되어 있어 債權管理의 長期化로 因한 不實債權이 發生할 憂慮가 있어 이를 考慮한 것으로서 信用貸付比率를 大幅 늘리는 것은 어려운 形便입니다.

○그리고 信用貸付 選定者가 障害者 1~3級 중 一部에 限定하고 있는 것은 財源形便上 不得已한 實情임을 理解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貸付金 支給이 늦은 事由는 貸付基

金 出資節次를 規定한 財政投資金融特別會計法('87.12.4 公布) 및 同法施行令('88.5.21 公布)이 最近에 制定되어 當初 14分期에 計劃하였던 基金出資가 '88.7.1에 비로소 이루어짐으로써 貸付金 支給이 遲延되었읍니다. 同 貸付金은 '88.7.21부터 農協 各 支店을 통하여 正常的으로 支給되고 있습니다.

問2) 產災患者 및 家族에 대한 醫療保險 惠澤程度

產災患者들은 療養終結後에도 災害로 인한 後遺症은 물론이고 正常人들보다 훨씬 잦은 疾病에 시달려 報償金마저 治療費로 없애버리는 事例가 많은데 이들과 이들의 家族들에 대한 醫療保護惠澤은 어느 程度인지?

(答辯)

○產災患者가 治療終結後 後遺症이나 合併症이 생긴 때에는 當初 傷病과 醫學的인 因果關係가 있으면 產災保險에서 다시 治療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當初의 傷病과 아무 상관이 없는 疾病이 생긴 경우에는 產災保險法上의 補償處理가 不可能하고 醫療保險法上 被保險者로서의 地位를 가지고 있는 勤勞者는 醫療保險惠澤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問3) 韓國產業安全公團의 地方組職 設置計劃
韓國產業安全公團이 設立되어 現在 製造業分野 7萬餘事業場에 對하여 7個 診斷班이 事業을 展開하고 있는데 과연 地方組職없이 出張만으로 現場에 適應되는 技術指導가 可能한가?

(答辯)

○韓國產業安全公團은 '87.12.9日 設立되어 今年初부터 產業安全保健에 관한 技術指導, 事業場診斷, 教育등의 事業을 推進하고 있습니다.

아직 地方組職이 없이 本部의 人力이 各 地方에까지 出張하여 業務를 遂行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그러나 今年度에는 于先 仁川과 釜山地域의 技術指導院 各 1個所를 設置하고 내년에는 大邱, 光州, 大田, 昌原地域에 技術指導院을 追加로 設置하도록 推進中에 있습니다. '89年까지 全國에 6個所의 技術指導院이 設置되면 金議員님께서 걱정하

시는 問題는 多少 解決되리라 믿읍니다.
○또한 앞으로 全國의 技術指導院 6個所를 設置完了한 後에도 運營結果에 따라 技術指導院을 더 設置해야 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綿密히 檢討하여 追加로 設置해 나갈 것임을 參考로 말씀드립니다.

問4) 韓國產業安全公團의 事業主 教育實績 및 反應

產業災害豫防은 事業主의 根本的인 意識이 매우 重要하다고 생각하는데 韓國產業安全公團에서 實施하고 있는 事業主들에 대한 教育實績과 被教育者들의 反應은 어떤지?

(答辯)

○韓國產業安全公團에서는 今年 5月25日부터 事業主 教育을 始作하여 今日 現在까지 2,734名이 教育을 받았읍니다. 被教育者들의 反應은 事業主에 대한 今年度 教育이 全部 終了되는 7月末 以後에 韓國產業安全公團에서 綜合的으로 教育評價書를 作成하여 當部에 提出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現在까지 被教育者들의 反應은 매우 좋은 것으로 報告 받고 있습니다.

問5) 最近 防衛產業體와 公益事業體의 不法爭議行爲件數 및 對策

最近 防衛產業體 및 公益事業體중에서 法秩序를 無視한 채 不法勞動爭議行爲를 한 事業場의 數는 얼마이며 이에 對한 勞動部의 對策은 무엇인가?

(答辯)

○今年의 경우 6.30現在 防衛產業體에서 25個, 公益事業體의 56個業體에서 不法爭議行爲가 發生하였읍니다.

○防衛產業體의 爭議行爲에 對하여는 그 處理對策을 '88.6.18日자로 市·道와 全地方 勞動官署에 示達하였는 바 그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爭議行爲가 進行中인 경우 市·道知事는 즉시 이의 中止를 警告하고 不法爭議行爲가 繼續되는 경우에는 告發措置토록 하며 主要防衛產業體에 對한 告發이 있거나 이를 認知한 경우 당해 地方의 有關機關들이 相互 協調하여 依法措置를 하도록 하였읍니다.

○또한 各 勞動委員會와 市·道知事는 勞動爭議發生申告 接受時에 主要防衛產業體

인지 여부를 判斷하여 爭議行爲가 禁止되는 事實을 勞·使 兩側에게 周知시키도록 하였습니다.

○公益事業體의 경우 不法爭議行爲가 發生하면 이를 즉시 中止하고 勞動爭議發生申告를 하도록 指導하여 勞動委員會의 調整節次를 通해 解決되도록 하고 있으며 事案의 重要性에 따라 國民經濟 및 日常生活에 미치는 影響을 勘案, 勞動委員會에서 仲裁에 回附하여 仲裁裁定을 通해 紛爭을 解決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李潤子委員

問1) 職業病의 事前管理 如何

1953年 公布된 勤勞基準法과 1969年 公布된 勤勞基準法 施行令에 의하면 職業病의 範圍·療養·賠償範圍 등이 規定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職業病이란 主로 生産이나 作業過程에서 일어나는 病이기 때문에 作業過程 또는 作業環境안에 이 職業病에 對한 對備策이 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施行令에는 主로 事故가 난 後의 對策으로만 생각되는 것들이 明示되어 있고 事前의 對備策에는 言及이 없는 것 같습니다. 職業病이나 作業中의 事故는 事前의 豫備가 事故發生後의 處理보다도 더욱 重要한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點을 補完하여 事前의 豫備策을 法令에 包含시키고 그것을 監督廳인 韓國産業安全公團이 철저히 監督해 나갈 것이 절대로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이 “事前의 豫備 내지 對備”가 職業病을 包含하는 死亡率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世界 第一이라는 不名譽를 씻을 수 있는 첫걸음이자 큰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後 즉 勤勞基準法施行令 以後에 이렇게 補完하는 法令이 制定되고 “事前의 對備”에 萬全이 期해지고 있는지 答하여 주십시오.

(答辯)

○1953年 制定된 勤勞基準法으로서李議員께서 指摘하신 대로 날로 增加하고 있는 産業災害와 職業病을 豫防하는 데 限界가 있었던 것이 事實입니다.

○따라서 1981.12.31 産業安全保健法을 制定公布하여 事業主로 하여금 有害危險施設의 改善, 有害物質의 使用制限, 作業環境

의 測定, 有害業務從事者에 對한 教育, 健康診斷의 實施 등 勤勞者의 健康障害 豫防을 爲하여 必要한 各種 措置를 規定하고 事業主가 履行하도록 義務化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産業安全保健法도 施行過程에서 未備點이 發見되면 언제든지 改正 補完하여 災害豫防에 萬全을 期하도록 하겠습니다.

問2) 職業病의 診斷 또는 判定에 關하여
지난 7.2 死亡한 溫度計製造會社인 協聖機工 勤勞者 文松逸군은

- 1) 서울大病院에서 水銀中毒으로 診斷이 되었지만
- 2) 한강聖心病院에서는 “水銀中毒의 可能性은 있으나 職業性으로는 認定되지 않는다”라는 調查結果가 나왔고
- 3) 카톨릭醫大에서는 職業關聯性이 있는 것으로 認定되는 등 判定基準이 다 다르게 나와 있어

職業病의 診斷이나 判定은 매우 어렵고 그래서 좀처럼 갈피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例를 들어 死因糾明과 같은 경우에 國立科學研究所가 最終의이고 權威的인 決定을 내리듯이 職業病의 診斷判定에 있어서도 하나의 特定機關, 例를 들면 “勤勞福祉公社法”에 의해 設立, 運營되는 여러 病院중의 하나가 그것을 專擔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勞動部의 産業安全保健 長·短期對策 P21를 보면 “職業病判定審議委員會”의 設置, 運營이 計劃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早速히 實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具體的으로 언제, 얼마만한 豫算으로, 어떤 方法으로 着手할 것인지 答하여 주십시오.
(答辯)

○李議員님이 指摘하신 바와 같이 職業病의 診斷이나 判定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職業病與否를 迅速하게 專門的으로 判定할 수 있는 機關이 絶對的으로 必要합니다.

○따라서 勞動部는 産業保健에 關한 專門家 15人으로 職業病判定審議委員會를 設置하고 必要한 경우에는 專門分野別로 分科別 專門委員會를 構成하여 現地調査 등 審議에 必要한 諸般活動을 通해 職業病 認定與否에 대해 迅速 正確하게 判定할 수 있도록 하고 7月22日에는 第1次로 京畿道 富川市 所在 건화商社 勤勞者의 카드뮴中毒

에 대한 職業病與否 審議를 할 計劃입니다.
○이의 運營을 위해 今年度에 所要되는 豫算 約 9百萬원은 既存 豫算을 活用하고 來年度에 必要한 豫算 約 2千萬원은 '89 年度 豫算에 反映토록 하겠습니다.

問3) 職業病的 種類와 規定

1969년에 公布된 勤勞基準法施行令 第54條 에는 職業病的 種類가 39項까지 걸쳐 자세히 規定되어 있고 韓國産業安全公團의 業務報告書 14·15페이지에도 몇 개가 例示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産業의 發展擴大에 따라서 男女別로 職業病도 增加될 것으로 豫測됩니다.

위의 施行令 公布以後 거의 20年이나 되었으니 職業病도 增加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現在는 職業病이 몇 種類이고 특히 女性勤勞者만의 職業病은 몇가지이고 이에 대한 調査研究는 해마다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對策은 어떻게 세웠고 그 實施를 어떻게 繼續하고 있는지 答하여 주십시오.

(答辯)

○우리나라의 職業病種類는 李議員께서 指摘하신 바와 같이 勤勞基準法施行令 第54條에 38個項目으로 分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實際로 每年 健康診斷結果 發見되는 職業病은 塵肺, 聾音性 難聽, 振動性 神經炎, 有機溶劑中毒, 特定化學物質中毒, 有害光線障害, 皮膚炎, 鉛中毒, 크롬中毒, 水銀中毒 등 10여종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職業病중 女性勤勞者만이 罹患되는 疾病은 따로 發見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주로 女性勤勞者가 많이 從事하고 있는 紡織業에서 나타나는 聾音性 難聽 罹患者중에서 女性勤勞者가 많다고 할 수 있고 最近 溫度計製造工場에서 從事하는 女性勤勞者 17名이 水銀中毒으로 發見된 事例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專門研究機關이 없어 職業病豫防에 대한 研究가 거의 全無하다시피 했습니다마는 來년에 職業病豫防研究所를 設立하여 豫防研究에 徹底를 期하도록 하겠습니다.

問4) 勤勞者の 産業災害나 職業病에 대한 教育의 實施

○지난번 水銀中毒事件으로 社會的 物議를

일으킨 春川市 후평동 所在 溫度計 體溫計, 血壓計, 製作所인 唯一 計量器 制作所를 가 볼 機會가 있었는데 勤勞者들이 다루고 있는 物件이 危險하고 中毒을 일으키는 무서운 것임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作業中 水銀取扱의 安全守則이 있을텐데 그것에 대한 教育이 없어서인지 겹겹이 함부로 다루다가 中毒이 되는 境遇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産業災害는 물론이고 職業病에 대해서도 事前에 그리고 作業途中에서라도 取扱에 注意하도록 하는 教育을 事業體가 하도록(勿論 잘하고 있는 事業體도 있는 줄 압니다) 指導 監督할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答하여 주십시오.

(答辯)

○産業災害나 職業病 豫防을 위해서는 有害·危險防止施設의 設置등 作業環境의 改善이 重要하지만 勤勞者에 對한 安全保健 教育도 重要하기 때문에 産業安全保健法 第23條에 依하면 事業主는 勤勞者에 對하여 安全保健에 關한 教育을 實施하도록 規定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事業主의 認識不足으로 因하여 勤勞者에 對한 教育을 實施하지 않거나 形式的으로 實施하는 事例가 많고 또한 專門的으로 教育을 實施할 수 있는 講師要員도 不足한 것이 事實입니다.

○따라서 今年에는 年中 事業主에 對한 指導監督을 強化하고 韓國産業安全公團으로 하여금 教育에 必要한 講師의 養成과 教材의 開發普及을 推進토록 하는 등 社內 安全保健教育이 內實있게 定着되도록 各種 措置를 講究해 나가고 있습니다.

問5) 國際水準의 産業災害率 確保方案의 有無 먼저 職業病的 事前管理에 關한 質問에서 言及한 바 있습니다만 產災死亡率 世界 第一이라는 不名譽를 하루속히 씻을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한 가지를 더 質問합니다.

勞動部の 今年度 産業安全保健 長·短期 對策 p.8에 우리 나라와 主要 外國과의 産業災害發生率과 度數率의 比較를 보니 日本, 臺灣, 「싱가폴」보다도 몇 배나 더하니 그

理由가 어디 있는지? 왜 우리나라는 죽이들 나라보다도 災害가 더 많은지? 그理由나 原因을 調査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물론 産業安全保健 長·短期 對策 p.11에는 三面에 걸쳐 産業災害의 原因이 說明되어 있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에서의 災害發生 原因이고 우리나라가 왜 이들 나라보다도 落後되었다는 理由는 아닌 것입니다. 되풀이가 됩니다만은 峯見으로는 이 原因 調査는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야 이들 나라와 같은 水準이 될 수 있는 對策을 세우고 그 對策을 執行하여 이 問題를 解決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적어도 이들 세 나라의 水準만큼 災害率을 줄일 수 있기 위하여는 몇 해가 걸릴 것입니까? 하여튼 現在 具體的인 方案과 그에 대한 實施作業이 있습니까?

(答辯)

○우리나라의 産業災害發生率이 日本 臺灣 「싱가폴」보다 몇 배나 높은 理由가 무엇이며 그 原因을 調査해 놓은 것이 있는가 하는 것과 이들 세 나라의 水準만큼 災害率을 줄일 수 있기 위하여는 몇 해가 걸릴 것인지 具體的인 方案과 그에 대한 實施 作業이 있는지에 對하여 答辯 드리겠습니다.

○李議員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外國의 災害原因과 우리나라의 災害原因을 比較해 보고 그 差異點을 把握하여 우리가 不足한 점을 補完해 나가는 것이 重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臺灣과 「싱가폴」의 產災原因 分析에 관한 資料는 確保하지 못하여 現在 日本의 產災原因에 대한 分析資料를 가지고 比較해 본 結果 產災의 起因物 分析에 있어 日本은 動力機械에 의한 災害가 17.9%, 動力運搬機에 의한 災害가 8.5%, 各種設備 4.9%, 建築物 17.3%, 物質·材料 26.6%, 其他 24.8%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動力機械 21.0%, 運搬機械 8.7%, 各種設備 19.6%, 建築物 15.4%, 物質·材料 15.4%, 其他 19.8%로써 우리나라의 事業場에 있어 機械와 設備의 安全度가 낮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原因分析을 바탕으로 이미 提出한 바 있는 産業安全保健 長·短期 對策에서 報告드린 바와 같이 危險機械·器具에 의한 災害의 根絶을 위해 強力한 指導·監督을 強化하고 무엇보다 이러한 機械·器具의 安全性을 根源的으로 確保하기 위해 一定한 機械·器具는 製造하여 出庫하기 前에 安全性 檢査를 實施하는 方案을 講究할 計劃입니다.

○또한 産業災害를 豫防하는데는 危險한 機械·器具에 대한 規制뿐만 아니라 其他의 要因에 대해서도 徹底한 改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產災가 많이 나는 企業에 對해서는 韓國産業安全公團의 專門人力과 裝備를 最大限 活用하여 產災의 原因을 찾아내고 改善方案을 指導함으로써 産業災害와 職業病을 持續的으로 줄여나갈 計劃입니다.

○이와 같은 計劃下에 政府에서는 產災發生率을 '87年の 2.66%에서 90년까지는 2% 未滿으로 줄이고 93年 以後에는 先進國과 같이 產災率 1%未滿 水準으로 減少시키고자 産業安全保健 長·短期 對策을 施行中에 있습니다.

問6) 勤勞監督官의 增員

本委員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現在 勤勞監督官은 總 375名이고 그중 女性勤勞監督官은 不過 13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勤勞者 總數는(勞動部 業務報告 p.22) 4,795,000名(5人以上 事業體 11萬個所에 있는 勤勞者數)이고 그중에 女性勤勞者는(勞動部 業務報告 p.25) 1,640,000名으로 全體의 34.2%나 되는데 女性監督官 13名은 勤勞監督官 總數의 3.5%밖에 안되니 너무나도 이 數字는 적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勤勞監督官의 業務의 過多로 보아 勤勞監督官 總數도 태부족이지만 더구나 女性勤勞者의 特殊事情에 따르는 監督業務의 增加를 勸案할 때 女性勤勞監督官의 增員의 必要는 再論의 餘地도 없습니다. 産業安全保健 長·短期 對策에도 이 增員의 計劃은 보이지가 않는데 이 計劃을 追加함이 어떻겠습니까?

(答辯)

○勤勞監督官의 定員은 業務量에 比하여 엄청나게 不足한 것이 事實입니다. 앞으로 定員과 豫算을 管掌하고 있는 總務處와 經濟企劃院 등 關係部處와 協議해서 勤勞監督官의 數를 每年 100名씩 3個年에 걸쳐 增員할 計劃입니다.

○勤勞監督官·任用制度는 다른 公務員 任用과 마찬가지로 主로 公開競爭試驗에 의하게 되므로 女性勤勞監督官만을 特別히 增員하는 問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運營의 妙를 살려서 女性監督官의 大幅 增員이 되도록 努力하겠습니다.

問7) 賃金隔差 解消方案에 關하여

제가 알고 있기에 是 生産職 勤勞者의 平均定額給與는 209,374원으로 管理職 平均定額給與 408,660원의 51.3%에 지나지 않고 月給與 總額으로 볼 때 生産職은 421,177원으로 管理職 716,945원의 58.9%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生産職 勤勞者가 同一學歷의 事務職과 同一賃金基準위에서 賦與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즉 生産職과 事務職과의 賃金構造改善에 대한 方案이 있으신지요?

또한 男女間에 있어서도 勞動部 '87.12月 統計에 依하면 男子 月平均 定額給與는 368,313원이고 女子는 月平均 定額給與가 185,287원으로 男子의 50.3%에 지나지 않고, 男子 月給與總額은(手當包含) 687,230원인데 女子는 328,138원으로 47.7%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實情이어서 같은 資格 같은 일에는 같은 報酬라는 原則下에서 이것 역시 하루 속히 賃金體系가 잘 이루어져야겠는데 언제나 이 賃金隔差가 改善되겠습니까?

그 方案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答辯)

○그간 學歷間·職種間 및 男女間의 賃金隔差가 深化되어 勤勞者 階層間에 違和感이 造成된 것은 물론 勞使紛糾의 原因이 되어 왔을 뿐 아니라 高學歷 取得의 지나친 過熱로 因하여 大學入試의 過多競爭 및 必要部門外의 高級人力 過剩輩出 등 副作用이 發生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政府에서는 이러한 不合理한 賃金隔差를 解消시키기 위하여

- 賃金引上時 下厚上薄原則에 依한 引上으로 低學歷 勤勞者와 生産職 勤勞者를 優待하도록 指導하고 있고

- 不合理한 賃金隔差를 誘發하는 報酬規程等 各種 規程도 改善토록 指導하고 있습니다.

○'87年 基準 賃金隔差에 對한 標本調査를 한 結果

- 學歷間 隔差는 生産職 男子 初賃基準 中卒을 100으로 볼 때 高卒 112 大卒 169로 나타났고

- 職種間 隔差는 高卒男子 初賃基準 事務職 對 生産職이 100 對 99로 隔差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男女間 隔差는 生産職 高卒 初賃基準 100 對 76으로 分析되었습니다.

○그러나 '87年 및 '88年의 賃金引上이 下厚上薄의 原則에 依據 低學歷 生産職 勤勞者의 賃金이 높게 引上되는 趨勢로 나타나 學歷間 職種間 男女間 賃金隔差가 懸隔히 縮小되어 사고 있습니다.

○'80年代 初에 比하여 賃金隔差는 相當히 改善되었으며 앞으로 6次 5個年計劃에 賃金隔差 緩和를 優先事業으로 選定 推進하여 그 隔差를 더욱 좁혀 나가도록 努力하겠습니다.

○出席委員

金 令 培	金 東 仁	孫 柱 煥
梁 慶 子	李 康 熙	李 潤 子
李 台 燮	張 永 喆	李 相 洙
李 海 瓊	盧 武 鉉	石 準 規
李 仁 濟	金 炳 龍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立 法 審 議 官 宋 芳 燮

○出席國務委員

勞 動 部 長 官 崔 明 憲

○出席政府委員

勞 動 部			
次 官	李 龍 俊		
企 劃 管 理 室 長	鄭 東 佑		
勞 政 局 長	具 然 春		
勤 勞 基 準 局 長	金 基 德		
職 業 安 定 局 長	金 濟 憲		
職 業 訓 練 局 長	禹 誠		

勞動保險局長

姜 斤 熙

○其他參席者

韓國職業訓練管理公團
理事 長

李 憲 琦

韓國產業安全公團
理事 長

鄭 東 喆

勤勞福祉公社社長

沈 大 燮

韓國海外開發公社
社 長

成 永 焄